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53호
2026. 6. 1.(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77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771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4772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규칙	11
제477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6
제4774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
제4775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26
제4776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8
제4777호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37
제4778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제477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4
제4780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2
제4781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8

[훈 령]

제1065호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61
--------	--------------------------------	----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문위원(4급)란 중 “운영, 행정자치”를 “행정자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운영수석전문위원은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 조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인 점과, 개방형직위 지정기준 (대통령령 제35981호)을 고려하여 개방형직위에서 지정 해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별표 1)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1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가. 사 업 명	나. 시비보조율	다. 비 고
1. 어린이집 운영	50%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 70% ◦차액보육료(일반)70%
2.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0%	
3.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	
4.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50%	
5.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50%	
6. 어린이집 기능 보강(자체)	정액	◦5~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1회 한정)
7. 아동급식 지원	50%	
8. 아동수당 지원	지방비의 70%	
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	50%	
10. 특화보육 지원(자체)	50%, 70%, 100%	◦시간연장근무수당 50% ◦365일 열린어린이집 지원 100%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70% ◦종교시설 어린이집 지원 50% ◦다문화 통합보육 어린이집 지원 50%
11.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50%	
12.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13. 매력일자리	70%	
14. 동행일자리	70%	
1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0%	◦매년 5%p씩 하향조정('22년 80% ~ '28년 50%) ◦단, 임대APT내 시설 100%
16.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0%	
17.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무원 중 식비 100%
18.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법인시설 10% 자부담 ◦SH, LH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 70%

가. 사 업 명	나. 시비보조율	다. 비 고
19.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60%	◦매년 5%p씩 하향조정('22년 80% ~ '28년 50%)
20.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21.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10억원 한도내/개소
22.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23. Day-care센터 설치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구립「기존경로당」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내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법인설치형 300백만원/개소 ◦설치주체가 자치구인 경우로 한정 ◦비선호시설 10% 추가 지원
24. 경로당운영비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25.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영양사 인건비 60% ◦경로식당 3,500원, 식사배달 3,500원, 밑반찬배달 4,000원 이상으로 단가 인상 시 인상분 차등보조(별표2)
26. 장애인복지관 건립	차등보조(별표3)	◦지원기준 - 면적: 2,400㎡ 한도 ◦비선호시설 10%p가산
27. 장애인복지관 운영	60%	◦매년 5%p씩 하향조정('22년 80% ~ '28년 50%)
28.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29.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0%	
30. 장애인 편의시설 자원센터 운영	50%	
31.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50%	
32.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차등보조(별표3)	◦연면적: 3,000㎡ 한도 ◦선호시설 10%p감액
3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방비의 50%	
34.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방비의 50%	
35. 통합사례관리 지원 - 인건비 - 구 사례관리비 - 동 사례관리비	지방비의 50%	
36.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시간제 일자리 - 복지 일자리 - 일반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방비의 50%	

가. 사 업 명	나. 시비보조율	다. 비 고
37.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지방비의 50%	
38.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지방비의 50%	
39.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40. 노인요양시설 설치	국비확보액의 275%	◦비선호시설 10% 가산 포함 (국비확보액의 250% + 25%)
41.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50%	
42. 내집주차장 조성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43.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44.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70%	
45.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46.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5~20백만원/구별
47.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80%	◦비선호시설 10%p 가산 포함 (보조율 70% + 가산 10%p)
48.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2백만원/구별
49.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50.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54,000천원/구별
51.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개소당 100백만원 한도내
52.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평가결과 차등지급
53.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차등보조(별표3)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 한도내 ◦선호시설 10%p감액
54.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등보조(별표3)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 한도내 ◦선호시설 10%p감액
55. 시 지정유산 보수정비	70%	
56. 시 지정(등록)유산 방법·방재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70%, 50%	◦시지정유산: 70% ◦시등록유산: 50%
57.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58.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창단~창단 2년차: 운영비 전액 ◦창단 3년차이상: 팀규모,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
59. 자치구 축구 및 풋살 교실 운영	정액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6,800천원/구별 ◦여성·유아축구교실운영: 12백만원/구별 ◦청소년풋살교실운영: 11,200천원/구별 ※ 시비 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0.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10백만원/구별

가. 사 업 명	나. 시비보조율	다. 비 고
61.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차등보조(별표3)	◦지원기준(건축비) - 3센터 3,300㎡ 한도내 - 4센터 2,956㎡ 한도내 ◦선호시설 10%p 감액
62. 생활체육시설 확충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신규실외체육시설 지원 ◦노후시설 재구조화 지원
63.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신축 - 면적상한: 2,000㎡ - 지원상한: 20억원 ◦ 리모델링 - 지원상한: 10억원
64.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70%	
6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정액	◦2~5백만원/단체별, 등급별
66.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차등보조(별표3)	◦1구 3시설 ◦지원기준: 1,650㎡ 한도 ◦선호시설 10%p 감액
67.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100%	
68.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50%	
69. 지역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방비의 50%	
70.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50%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50%	◦저소득층 본인부담 지원: 시50%, 구50% ◦비혼모 본인부담 지원: 시100%
72. 난임부부 지원(자체)	100%	
73.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방비의 50%	
74.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지방비의 50%	
75.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지방비의 50%	
76. 통합 방문건강관리	지방비의 30%	
77.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78.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주차장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79. 지능형 CCTV 및 관제센터 성능개선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0. 제설대책 추진	정액	◦120~240백만원/구별 ◦시도 제설면적에 따라 차등지급 -제설면적 0.6㎢ 미만 자치구: 120백만원 -제설면적 0.6㎢ 이상 1.0㎢ 미만 자치구: 180백만원 -제설면적 1.0㎢ 이상 자치구: 240백만원
81.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50%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가. 사 업 명	나. 시비보조율	다. 비 고
82.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 용역비 지원	50%	
83.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정비용역비 (토지등 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8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85.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	30%, 50%	◦유기동물 보호조치 시비 추가사업 30%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 관리 50%
86.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87. 정원박람회 존치정원 관리 및 활용	50%	
88.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방비의 50%	
89.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50%	
90.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30%지원
91.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건립사업(별표3 적용대상)에 대한 면적당 건립단가는 사업계획 수립(결재) 당시의 현행화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신축 또는 증축 평균 단가를 적용

※ 투자심사 대상인 경우, 투자심사 의뢰 당시의 공사비 적용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보조사업의 변경·통합 등 변동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반영하여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및 보조율 현행화, 체계 정비(별표 1)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2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영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이용료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람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람료 및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수강료는 조례 제10조의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의 감면) 조례 제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람료의 100분의 50 이상, 조례 제9조의2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15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대관 신청)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영화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대관을 받으려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등이 포함된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관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대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료 부과·징수)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대관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영화센터 관리·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영화센터 상영관 관람료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관 람 료
개 인	성인	7,000원
	청소년	6,000원
단체(10인 이상)		5,000원
※ 청소년: 4세 이상 19세 미만		

[별표 2]

서울영화센터 시설 대관료 (제5조 관련)

구 분	기준시간	대관료(원)	1일 대관료(원)
상영관 I	3시간	580,000	1,400,000
상영관 II	3시간	270,000	650,000
상영관 III	3시간	240,000	580,000
다목적실, 기획전시실	1시간	70,000	700,000
옥상	1시간	60,000	600,000
공유오피스	1개월	200,000	-

[별표 3]

서울영화센터 대관료 반환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상영관	1. 대관일 기준 60일 이상 전 취소 : 전액 반환 2. 대관일 기준 60일 미만 전 취소 : 계약금을 제외한 반환 3. 대관일 기준 30일 미만 전 취소 : 납부한 대관료의 50% 4. 대관일 기준 3일 이내 취소 : 반환하지 않음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옥상	1. 대관일 기준 7일 이상 전 취소 : 전액 반환 2. 대관일로부터 3~6일 전 : 납부한 대관료의 90% 3. 대관일로부터 1~2일 전 : 납부한 대관료의 50% 4. 대관일 당일 취소 : 반환하지 않음
공유오피스	1. 이용 개시 1일 이상 전 취소 : 전액 반환 2. 이용 개시 당일 : 1일분 공제 후 남은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이용기간 중 : 남은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 반환 금액 계산 시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다른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및 제2조)
- 나. 영상산업 지원시설 상영관 관람료 등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및 제4조)
- 다. 영상산업 지원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조~제7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이루어지도록하기” 를 “이루어지도록 하기” 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지정취소처분” 을 “지정취소 처분” 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제46조제1항제9호 중 “과렛트” 를 “팻릿” 으로 한다.

제56조의4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단서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 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
(제2조 관련)

도매시장명	위 치	면 적(㎡)		거 래 품 목
		대 지	건 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	543,451	506,096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 선어류, 패류, 건어류, 횡어(내수면어 포함), 염장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 농수산물 단순가공물품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427)	213,032	131,641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 농수산물 단순가공물품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재동 223)	32,095	18,090	양곡류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334)	40,174	118,346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도매시장 주소·면적 등 기본사항을 현행화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매시장 주소 및 면적, 거래품목 현행화(별표 1)
- 나. 법령 및 조례와의 불일치 용어, 띄어쓰기, 일본어투 문구 등 정비(제1조, 제4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4호, 제2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9호, 제56조의4제5항, 제64조제1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4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시 본청의 경우에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민간기관은 제외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간정보체계” 를 “공간정보정책”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기본공간정보 세부항목의 지정·갱신 및 고시

제3조제2항 중 “포함여부” 를 “포함 여부” 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간정보협의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지리정보, 측량, 지적, 도시공학, 정보통신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부연구위원급 이상에 재직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4(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협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총괄부서장이 지정한다.
-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안건 검토 시 회피·제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최·폐회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의 성명
 - 3. 안건 내용
 - 4. 자문 결과
 - 5. 각 위원의 주요 발언 요지
- ⑧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논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⑨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를 “제9조”로, “다른”을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를 비롯한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11조”를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10조”로,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도시기본공간정보 세부항목의 지정·갱신) ① 총괄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기본공간정보의 세부항목(이하 “세부항목”이라 한다)을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협의회 의 자문을 거쳐 지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의 지정·갱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항목을 지정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기본공간정보가 정확성·일관성·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제3항 중 “납부여부”를 “납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생산일자·종류·발행부서”를 “생산일자, 종류, 발행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공간정보는 별표”를 “항공사진은 별표 2”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인수증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4항의 공간정보 제공 대장은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각각 같음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2(중전의 별표)의 제목 중 “공간정보 처리기한”을 “공간정보(항공사진) 처리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 설>

도시기본공간정보 세부항목 지정·갱신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지정·갱신 기준	비고
1. 도시기본공간정보는 일원화된 데이터 표준·갱신·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신뢰도와 정확성을 갖춘 공간정보로서, 세부항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 및 사업에서 공통으로 참조·활용되는 기초 데이터 나. 다수 부서·시스템·업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거나 활용 필요성이 높은 것 다. 도시공간의 주요 객체(주소·경계·지형지물·기반시설 등)를 대표하거나, 다른 공간정보의 구축·정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정보로 기능할 수 있는 것 라. 데이터의 정의·범위·구축기준이 명확하여 동일 기준에 따라 반복 구축이 가능하고, 분류체계(코드·관리번호 등)를 통해 항목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것 마. 데이터 현행화 주기 및 이력관리 체계를 설정할 수 있고, 정기 또는 수시 현행화를 통해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2. 본 기준은 지정된 도시기본공간정보의 갱신(추가, 삭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26. 00. 00.> <중전의 별표에서 이동>

공간정보(항공사진) 처리기한(제8조제8항 관련)

신청수량	처리기한
10매 이하	7일
11매 이상 20매 이하	14일
21매 이상	21일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함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 00. 00.> <신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소속기관(부서)			
	주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사 용 목 적				
신청내용	신 청 자 료			
	자 료 형 식			
	자 료 제 공 방 법			
	신 청 지 역			
사용기간	~			
보안관리 방안				
활용 후 관리대책				
사용자 준수사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상기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사용자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자료 사용을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첨부서류 (필요시)	보안대책 1부, 서약서 1부, 위치도 1부 등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정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제외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간정보협의회 운영 및 도시기본공간정보 항목 지정·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함(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2조, 제4조의2, 별표 1)
- 나. 공간정보 제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수방식에 따른 처리기준 보완 및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정비함(제8조제1항, 별표 2)
- 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제8조제5항, 별지 제1호의2서식)
- 라. 조례 인용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정하고, 조례와 중복되거나 명기 필요성이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함(제4조, 제5조, 제7조, 종전 제8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표현을 통일하고, 별표 표제·번호를 명확하게 개선함(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제4항·제8항, 별표 2)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5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세무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정하는”을 “정한 기일 전까지 같은 항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전까지 같은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 하는 것으로 규정(제16조제1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6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기간) ①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사용신청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 대장에 기록한다.

③ 제출된 신청서가 미흡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부서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광장 사용허가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 순위)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 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처리현황 공개) 주무부서는 사용허가가 처리된 내역은 즉시 홈페이지에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광장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장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광장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
4. 7일 이상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다른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준수사항)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장소와 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은 허가된 기준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료 기준)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료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감면율은 별표 4에 따르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장사용료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용료	m ² /시간	10원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시 설	금 액 (시간당)	비 고
다목적 코트	10,000원	
배드민턴 코트	5,000원	
탁구대(1면)	5,000원	
피트니스	20,000원	
GX 룸	20,000원	
기 타	1. 사용료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도구의 대여도 포함한다. 2. 위 사용료는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별표 3]

광장이용료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및 조경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구분	프로그램명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체육시설 프로그램	풋살, 농구, 배드민턴, 탁구	1인 1회당	5,000	재료비 포함
	GX, 피트니스		10,000	
조경시설 프로그램	어린이 가드닝		5,000원	
	실내 가드닝 실습		10,000원	
	야외 가드닝 실습		10,000원	

[별표 4]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시설 이용료 감면율

(제8조제2항 관련)

대 상	감면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5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0%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50%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	50%
11. 65세 이상 어르신	50%

[별지 제1호서식]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사용허가 통보서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면적			사용료	
신청자	담당자		전화번호 (핸드폰)	
	단체명 (대표자)			
	주소			
승인조건 및 기타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사용허가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제1~5조)
- 나. 사용자 준수사항(제6조)
- 다.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제7~8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7호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반기별” 을 “분기별”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중 보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실장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로, “각각 해당” 을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반기별” 을 “분기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차량신회등, 보행신회등 및 보행신회등 보조장치 고장신고 (제3조제1항제1호)	신고 건		10,000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3조제1항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0건 미만	20,000원
		10건 이상 ~ 15건 미만	40,000원
		15건 이상 ~ 20건 미만	60,000원
		20건 이상 ~ 25건 미만	80,000원
		25건 이상 ~ 30건 미만	100,000원
		30건 이상 ~ 35건 미만	120,000원
		35건 이상 ~ 40건 미만	140,000원
		40건 이상 ~ 45건 미만	160,000원
		45건 이상 ~ 50건 미만	180,000원
		50건 이상	200,000원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5건 미만	20,000원
		15건 이상 ~ 30건 미만	30,000원
		30건 이상 ~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 75건 미만	100,000원
		75건 이상	200,000원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0건 미만	20,000원
		10건 이상 ~ 20건 미만	30,000원
		20건 이상 ~ 30건 미만	50,000원
		30건 이상 ~ 40건 미만	80,000원
		40건 이상 ~ 50건 미만	100,000원
		50건 이상 ~ 80건 미만	120,000원
		80건 이상	150,000원
	보도 불편사항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0건 미만	20,000원
		10건 이상 ~ 20건 미만	40,000원
		20건 이상 ~ 30건 미만	60,000원
		30건 이상 ~ 40건 미만	80,000원
		40건 이상 ~ 50건 미만	100,000원
		50건 이상 ~ 60건 미만	120,000원
		60건 이상 ~ 70건 미만	140,000원
		70건 이상 ~ 80건 미만	160,000원
		80건 이상 ~ 90건 미만	180,000원
		90건 이상 ~ 100건 미만	200,000원
손괴 원인자 신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	200,000원 이상~ 600,000원 미만	10,000원
		6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30,000원
		1,000,000원 이상	50,000원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중 신고포상금 지급 주기 및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포상금을 반기별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변경(제4조 및 제7조)
- 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및 지급금액 조정(별표)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8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입주자 선정기준” 을 “입주자선정 기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제1호” 를 “제8조제1항” 으로, “공급한다” 를 “공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을 “규칙”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및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 관련)

1. 입주자 선정순위(건설형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구 분	내 용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성년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나. 공급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다.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라.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 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마. 공급신청자의 청약저축 납입 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바. 공급신청자의 청약예금 가입 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성년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라’의 부양가족 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하며, 태아를 포함함.

※ ‘마’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제외

※ ‘바’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제외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준을 적용하고, 무주택기간 산정 시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3. 감점 산정기준(당첨자 발표일 기준)

감점 기준	감점 점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나. 최근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4점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2점

※ 단, 결혼,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기존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제외(무주택세대구성원 수가 감소된 경우 더 작은 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상기 제2호 및 제3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에 따른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주거 선택 기회 보장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감점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기전세주택 감점 산정기준 예외 규정 신설(별표 2)

◆ **서울특별시규칙 제477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조합원명부” 를 “조합원 명부” 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용자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용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자신청 대상자
2. 우선 용자대상 사업시행구역
3. 용자금액
4. 상환기간 및 방법
5. 이율
6. 신청기간
7. 신청서류

제19조(용자신청대상자) 용자신청대상자는 용자계획 공고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조합(법 제17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20조(우선용자대상 사업시행구역) 시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용자대상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여 다른 사업시행구역보다 우선하여 용자할 수 있다.

제21조(용자신청) ① 용자신청대상자가 조례 제46조에 따른 비용을 용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6호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용자금신청서를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집행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용자대상 및 금액 결정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용자신청대상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집행계획 등의 적정성 및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자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용자대상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용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며, 이 경우 융자금액 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3조(융자사무의 위탁·대행) ① 융자사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융자금 운용·위탁·대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4조(융자대상자 통보) ① 시장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대행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수탁·대행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지막 융자계획에 관한 공고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날까지 수탁·대행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 대출 신청을 한 융자대상자는 해당 연도 내에 수탁·대행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상자가 수탁·대행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전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와 수탁·대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대행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 ③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법령에 따라 새로 승인 또는 인가를 얻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26조(융자금 상환방법 등) ① 융자대상자는 수탁·대행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이자 포함)을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하고 시장에게 융자금 상환 증빙서류를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1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별 융자 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등) ① 융자금 운용과 수탁·대행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 ② 수탁기관은 융자금 대여 시 시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의 상환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

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 계산 시 대여일, 상환일 및 상환일 전날은 이자계산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은 365일로 한다.

⑤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을 상환기일 전에 수탁기관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융자금을 대행기관에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경우 교부 및 반환 조건 등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⑧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융자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용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용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조합설립 동의율 (10점)	1	80% 이상	10
	2	80% 미만	8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0점)	1	전용 60㎡ 이하가 전체 세대수의 45% 이상	10
	2	전용 60㎡ 이하가 전체 세대수의 45% 미만	8
사업시행구역 노후도 (10점)	1	90% 이상	10
	2	70% 이상 90% 미만	8
	3	70% 미만	6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점)	1	충족도 50% 미만	10
	2	충족도 50 ~ 70% 미만	8
	3	충족도 70% 이상	6
사업추진단계 (10점)	1	조합설립인가 후	10
	2	통합심의 후	8
용자지원여부 (10점)	1	용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10
	2	용자대상자로 결정되어 용자금을 받은 경우	8
공공지원 규정 적용여부 (10점)	1	예산·회계규정	4
	2	행정업무규정	3
	3	선거관리규정	3
정성평가(30점)	용자금 지원 여부를 위한 적정성 검토 등		30

[별지 제26호서식]

용자금신청서

신 청 인	조합 명칭				
	사업유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中 택1)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시행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m ²
	위치				
신청금액			금 원정(W)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용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7호에 따른 신청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7호서식]

용자금 대여차용증서

대 여 금 액	일금 원정(W)
대 여 기 간	
대 여 일 자	년 월 일(용자대상자 :)
이 자 율	대여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용자금 운용·위탁·대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여금으로 차용하며 위 규칙 및 협약에서 정한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8호서식]

용자금관리카드

일련 번호	자치구	구역명	대표자	용자 방식	용자 기관	용자금액 (원)	용자 일자	연장 일자	상환 일자	상환금액 (원)		비고 (전화번호)
										원금	이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시행규칙」(이하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 관련 동 조례 시행규칙 상 세부 근거 마련

-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시행규칙」 조문 신설 : 융자계획 수립(제18조), 융자신청대상자(제19조), 우선융자대상 사업시행구역(제20조), 융자신청(제21조), 융자 대상 및 금액 결정 방법 등(제22조), 융자사무의 위탁·대행(제23조), 융자대상자 통보(제24조), 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등(제25조), 융자금 상환방법 등(제26조), 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등(제27조)
-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신설(별표)
- 융자금 신청서, 융자금 대여 차용증서, 융자금 관리카드 서식 신설(별지 제26호~제28호 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780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간선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제2장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제3조(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2.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접도 요건: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그 중 한 면은 폭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를 것

제4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용도지역 요건: 영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면적 및 접도 요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면적은 2만㎡ 이상, 6만㎡ 이하로 하되, 접하는 도로의 폭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

- 1) 면적 2만㎡ 이상, 3만㎡ 이하: 1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
- 2) 면적 3만㎡ 초과, 6만㎡ 이하: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

나.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구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를 것

제3장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제5조(위원 위촉)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회의결과와 관리) ①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4장 지원 등

제7조(공공기여 계획 수립 세부기준 등)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수립의 세부 기준 및 설치비용의 사용 등 운영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여 계획은 상위계획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가 요구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수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를 것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제9조(운영기준) 시장은 복합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서울특별시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성명 : ○ ○ ○

귀하를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자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2026. 1. 5.)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입지 기준 마련(제3조 및 제4조)
- 나.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
- 다. 공공기여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제7조)
- 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 기준 규정(제8조)
- 마. 세부 운영기준의 별도 수립 근거 마련(제9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781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직선부의 건축한계)”를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선부”를 “직선구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곡선부의 건축한계 확대)”를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로 하고, 같은 조 중 “곡선부”를 “곡선구간”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을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축한계외”를 “건축한계 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영 제74조 제1항”을 “영 제7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 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2조 제2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직선부의 건축한계에 관한 특례)”를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직선부”를 각각 “직선구간”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에 관한 특례)”를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한계외”를 “건축한계 외”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건축한계에 관한 특례)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축한계는 동적차량한계에 의해

점유되는 공간에 곡률, 캔트, 궤도구조물 시공 및 유지보수 허용한도, 인접도로변 구조물의 건축 허용한도, 차량주행 시 확보간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인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동적차량한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적한계 내에서 열차의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 이격거리를 축소 조정할 수 있으며, 차량기지에서 차량검수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판토품자점검대, 플랫폼, 세척대 등)는 차량한계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호, 승강장문 등 비구조재 시설물: 50밀리미터
2. 비상통로: 50밀리미터
3. 안전난간, 벽, 전철주 등 구조재 시설물: 150밀리미터

제43조 중 “별표 2” 를 “별표 2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토부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최대동적차량한계” 에서 “동적차량한계” 로 정비하고, 선로 조건 및 주변여건 등으로 획일적 기준 적용이 불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경량전철 특례(제30조)와 같이 건축한계 적용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최대동적차량한계” 를 “동적차량한계” 로 용어를 정비함(제38조)
- 나. 노면전차에 대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한계를 축소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제38조)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65호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6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석(標石)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석을 체계적으로 건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석”이란 사라진 문화·자연유산의 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물(標識物)을 말한다.
2. “정비”란 표석의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보수 등을 말한다.
3. “관리”란 표석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 상시 점검, 응급조치, 청소 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정·등록 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의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표석의 설치·정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시의 자치구 표석 설치 및 정비 사업과 민간이 서울시 공유재산인 공원, 도로, 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표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표석의 설치·정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장 표석 설치

제5조(설치 기준) ① 표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지정·등록 유산이 아닌 유적 중 형성된 후(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인물의 경우 사망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다수 시민이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석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의 가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2. 고증을 통해 유적의 원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일 유적, 사건 또는 인물과 관련하여 이미 안내판·동상·기념비 등이 설치되어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

2. 특정 사건 또는 인물과 관련된 표석은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1개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존하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해증진이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표석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석은 유적의 원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위치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자인적 접근 방법이나 별도의 안내표지 등을 활용하여, 위치 고충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사적 층위가 중첩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형 표석을 설치할 수 있다.
 4. 관서나 건물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곳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문화적 · 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대표성이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⑤ 표석 문안 작성 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표석 제작 및 설치는 「표석 디자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표석 설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적이 소재하는 관할 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은 표석을 설치하려면 국가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1명 이상에게 해당 유적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표석을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최종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석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표석 관리 및 정비

- 제7조(관리) ① 시장은 표석을 설치·정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표석의 상시 점검, 응급조치, 청소 등 일상적 관리를 수행하며, 필요시 시장과 협력하여 정비 작업을 지원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석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표석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2. 관할 구역 내 표석 상시 점검과 표석 및 주변의 청결 유지
 3. 관할 구역 내 표석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 제8조(철거)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석을 철거할 수 있다.
1. 위치 또는 내용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공공의 표석으로서 적정성을 상실한

경우

2. 특정 개인, 가문 또는 집단의 명예 현창이나 홍보 등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원래의 유적이 확인되어 표석 설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국가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안내판이 설치되었거나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로 표석의 존치가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5.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공공적 논란이 발생한 경우
- 제9조(이설) 표석의 형태와 문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이설할 수 있다.
1. 표석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이 사료나 발굴 조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2.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3. 표석이 사람들의 시야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본래의 안내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문안 수정) ① 표석의 형태와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문안 내용만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수정할 수 있다.

1. 문안에 역사적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2. 역사적 사건의 전개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3.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거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표제어의 단순 반복에 그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문안의 표현이나 내용이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는 경우
- ② 표석의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등 정비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순 정비의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표석 문안 작성 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가. 문안작성

- 1) 문안은 핵심 정보 위주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 3) 문안은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표석의 전체적인 디자인 및 레이아웃에 부합되도록 한다.
- 4) 본문의 분량은 최대 3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100자 내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자 표기 제외). 다만 필요할 경우 100자를 초과할 수 있으며 해당 문화·자연유산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 5) 문안은 문법과 어법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립국어원 또는 국립국어원에서 위촉한 감수위원,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친다.

나. 문안변역

- 1) 표제어는 한자와 영문을 함께 표기하고, 본문은 국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어 등 외국문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2) 영문 작성 시 국어 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의역(발췌번역)을 실시하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문안의 구성요소

가. 표제어(표석 명칭)

- 1) 표제어는 해당 문화·자연유산의 명칭에 ‘터’를 붙여서 제시한다.

나. 본문(기술순서)

- 1)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자연유산의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한 문장으로, 가능한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문화·자연유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핵심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결정해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드러나도록 표현한다.
- 2)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며, 첫 문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어떤 사건에 관한 원인, 전개, 결과 등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 3) 세 번째 문장은 표제어와 해당 문화·자연유산 터와의 연관성을 부가적으로 서술한다. 경우에 따라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한 문장으로 합쳐서 서술할 수 있다.

다. 부기정보

- 1) 표석에는 설치시기 및 설치주체를 표기하고, 소재지는 생략한다.

3. 문안 구성요소별 세부기준

가. 표제어

- 1) 표제어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 2) 표제어의 한자는 단어 내부에서 음성이 바뀌지 않고 한자로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표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
- 3) 표제어에 한자, 영문 등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 국문, 한자, 영문 등의 순으로 표기하며, 같은 행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단, 글자 크기는 한자, 영문 등이 국문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언어(국문, 영문)의 표기

- 1) 본문은 국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문화·자연유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부 용어에 한해 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2) 언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한다.
- 3) 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 내에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관계,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4) 문화·자연유산 명칭 및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 5) 문안의 국문, 영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되게 표기하며,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 표기할 수는 없다.

다. 설치시기 및 설치주체

- 1) 설치연도 및 설치주체는 국문으로 표기하고, 한자와 영문표기는 생략한다. 이 경우 글자 크기는 표제어보다 작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자의 표기

- 1) 한자는 표제어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문화·자연유산 명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 전달 및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 여부는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2) 본문에 한자를 표기할 때는 해당 글자의 오른쪽 상단에 크기를 작게 하여 표기한다. 이 경우 별도의 괄호()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 3) 모든 한자는 동일 표식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1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제어와 동일한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다.
- 4) 인물명의 경우 해당 문화·자연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경우에만 한자를 사용한다.
- 5) 인물의 호는 되도록이면 표기하지 않되,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 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한 경우에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표기한다.

마. 연대 표기

- 1) 연도의 표기는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연도로 표기하며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대로 표기한다.
- 2)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연도 뒤에 ‘경’, ‘즈음’ 등을 붙여서 표기할 수도 있다.
- 3) 왕의 재위 연호를 쓰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확한 연도 표기는 오른쪽 상단에 본문보다

- 작게 표기한다. 이 경우 괄호() 및 ‘년’은 생략한다.
- 4) 해당 문화·자연유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를 표기하고, 주변 인물들의 출생 및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다. 표기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본문보다 작게 하며, 이 경우 괄호()는 생략한다. 한자와 병행 표기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석 설치 신청서

(앞쪽)

신 청 인	성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유 적 / 터	명 칭	
	유 적 위 치	
	유 적 연 대	
	유적 연혁 · 유래 및 특징	
	토 지 소 유 자 (또는 기 관 명)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사 유	
그 밖 의 사 항	

위 유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표석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뒤쪽)

신청서 제출서 인류	유적 관련 사진·도면 및 문헌자료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인→자치구 →서울시) ⇒ 사전조사 (신청 타당성, 유사사례 검토) ⇒ 전문가 조사 (국가유산위원, 전문위원 등) ⇒ 국가유산위원회 사전 심의 ↓ 설치예고 (서울시보 30일 이상) ⇐ 국가유산위원회 최종심의 ⇐ 표석 설치 (서울시)

[별지 제2호서식]

표석 정비 신청서

신 청 인	성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정 비 대 상	표 석 명 칭		
	표 석 문 안		
	표 석 위 치		
	정 비 사 유		
현 황 사 진			
그 밖 의 사 항			

위 표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표석 관리대장

표석 현황				
관리번호			표 석 명	
위 치				
문안 내용				
규 모			형 태	
관리부서			연 락 처	
표석사진 및 위치도				
점검 및 정비 이력 / 시민신고 처리 이력				
점검내역			정비내역	
점검일자 (접수일자)	점검자 (접수자)	점검결과 (접수내용)	정비일자	조치사항 및 정비내용
점검 및 정비 사진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 정비일자 : ○ 정비부서 :
(사진설명)			(사진설명)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표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표석 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제정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사업의 계획수립
- 나. 제2장 (표석 설치): 설치 기준, 설치 절차
- 다. 제3장 (표석 관리 및 정비): 표석 관리의 책임 및 역할, 철거·이설·문안수정 기준 및 절차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